

釜山外國語大學校 總同門會則

第一章 總則

제1조 (명칭) 본회는 부산외국어대학교 총동문회(이하“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문회·모교발전·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 본회는 다음과 같이 사무소를 설치한다.

1. 본회는 본부를 부산광역시에 두고 시·도와 주요직장 또는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 본회는 단위동문회(학과별, 국내외지역별, 직능별, 자랑스런외성인상수상자회, 기타 소모임 동문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본회는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1. 회원 상호간의 우의증진에 필요한사업
2.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
3. 회보 및 간행물의 출판사업
4. 본회의 재정확충에 필요한 수익사업<개정 2011.5.25>
5.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第二章 會員

제5조 (회원구분·자격) 본회 회원은 정회원·준회원·특별회원·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은 각 대학 및 각대학원을 졸업한자 및 국제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한자 또는 본 대학 1학기 이상을 수료한 자
2. 준회원은 모교에 재학하였으나 정회원의 자격을 갖지 못한 자
3. 특별회원은 모교의 전·현직 교직원 중에 본회의 발전에 현저하게 공이 많은 자로서 회장단의 승인을 받은 자
4. 명예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에 속하지 아니한 모교교수, 모교에서 명예학위를 받은 자와 모교나 본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회장단에서 추천한 자

제6조 (권리와 의무) 본회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3.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은 회비부담과 회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 (선임과 임기) 본회 회원의 선임과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고문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 자·모교총장 또는 모교 및 동문회 발전에 기여한 자 중 운영 위원회에서 추대한 자로 한다.
 2. 회장과 감사의 선출은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회원 중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회장과 감사 및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및 중임할 수 있다.
 4.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 다음 각 호로 한다.
 - ①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한다.
 - ② 회장이 결원일 때에는 보선하지 않고 수석부회장·부회장 중 선학번순,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관장한다.
 - ③ 제①호 및 제②호의 규정에 의해 선출 또는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④ 임원은 임기만료라 할지라도 후임자가 취임하기 전까지는 전임자가 그 직무를 하는 것으로 한다.
 - ⑤ 수석부회장은 이사회 및 부회장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 ⑥ 사무총장은 회장이 사무국장 및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
 - ⑦ 사무국장은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 단, 당연직 사무국장은 각 단위별 총무단에서 1명씩 선임된 자로 한다.
- ⑧ 간사는 사무총장이 임명하고 회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본회의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① 고 문 단 : 약간명
 - ② 회 장 : 1인
 - ③ 수석 부회장 : 1인 이상
 - ④ 사 무 총 장 : 1인
 - ⑤ 부 회 장 단 : 30인 이내 <개정 2013.6.5>
(단, 당연직 부회장은 단위동문회별 회장의 수로 한다.)
 - ⑥ 운 영 위 원 : 약간명
 - ⑦ 감 사 : 2인
 - ⑧ 국 장 : 사무국장과 각 단위별 총무단에서 (각 1명씩)선임된 자
 - ⑨ 간 사 : 동문회에서 운영에 필요한 수

제9조 (임원의 직무) 본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수 석 부 회 장 :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부 회 장 : 수석부회장이 유고시 부회장 중 선학번순, 연장자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

행한다.

5. 사 무 총 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하고 사무국을 총괄한다.
6. 사 무 국 장 : 회장과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집행한다.
7. 간 사 : 사무국장을 보좌하며 사무국 업무를 지원한다.
8. 고 문 : 본회의 자문에 응하고 각급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
9. 감 사 : 본회의 업무 및 재정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에 보고하며 본회의 각급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第三章 會議

제10조 (회의) 본회에 총회·운영위원회 및 이사회를 둔다.

제11조 (총회의 개최)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정기총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1회 12월 중 개최하고,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
2. 부회장 5인 이상 및 회원 100명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 또는 본회의 운영에 있어서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감사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2조 (회의의 공고)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임시총회는 회장이 회의개최일 10일전, 동문홈페이지, 서면, e-mail 등으로 공고하여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1.5.25>

제13조 (회의의 정족수) 총회는 50인 이상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로 의결하고, 가부동수 일 때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단 결석회원의 위임장은 정족수에는 적용하지만 표결권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4조 (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승인한다.

1. 회장 및 감사의 선출
2. 예산·결산의 승인
3. 회칙개정
4.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한 사항

제15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회장·수석부회장·부회장·사무총장·사무국장 및 회장이 추천한자로 구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전문개정 2011.5.25>

- ①정기총회 개최일시
- ②총회의 위임사항
- ③본회의 기본 운영방침 및 중요 사업계획
- ④예산의 전용 및 예비비 지출에 관한 승인
- ⑤입회비와 일반회원 연회비

- ⑥지역·직장·기타동문회 설치 승인
- ⑦고문 추대
- ⑧직원의 정원과 보수책정
- ⑨사무국으로부터 상정되는 제안건
- ⑩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 ⑪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 부의할 안건

제16조 (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사무총장·단위별 회장(총무)으로 구성하며, 다음과 같은 본회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전문개정 2011.5.25>

- ①차기회장 및 감사의 추천
 - ②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③총회의 위임 사항
 - ④총회에 부의할 안건
 - ⑤명예회원 추대
 - ⑥회칙의 제정 및 개정
 - ⑦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2. 이사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한다.

제17조(의사록 작성) 총회·운영위원회·이사회 의결사항에 관한 경과요지와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둔다.

제18조 (사무국) 본회는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동문회 사무국을 둔다.

- 1.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심의하여 정한다.
- 2. 사무국장 및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第四章 會計

제21조 (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 1. 입회비
- 2. 회 비
- 3. 찬조금
- 4. 보조금
- 5. 수익사업 수익금<개정 2011.5.25>

제22조 (회비)

- 1. 본회의 회비는 일반회원회비, 임원회비, 단위별 동문회 회비,특별회비로 구분한다.
- 2. 입회비와 일반회원·지부 및 단위동문회 연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 3. 임원의 회비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전문개정 2013.6.5>

- ①고 문 : 10만 원 이상

②회 장 : 200만 원 이상

③수석 부회장 : 100만 원 이상

④부 회 장 : 10만 원 이상

⑤감 사 : 10만 원 이상

⑥당연직부회장 : 10만 원 이상

⑦일반회원 : 1만원 이상

⑧지부 및 단위동문회 : 10만원 이상

4. 회비납부는 회계연도 2월까지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24조 (회계보고) 사무총장은 당해 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 (표창) 본회 및 모교를 위하여 큰 공이 있는 동문, 본회의 회원으로서 직계 2대가 모교를 졸업한 가족 또는 동일 호적부상 5인 이상 모교를 졸업한 가족에게 포상한다.

제26조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第五章 慶弔事

제27조 본회는 회원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 격 : 총동문회 임원진 및 단위별 동문회 임원진에 한한다.

(범위는 직계에 한한다.)

2. 경조비 : ①총동문회기 설치

2. 경조비 : ②조화 또는 경조비 20만원 이내에서 지출한다.

단, 일반 정회원의 요청 시 총동문회기는 비치할 수 있다.

第六章 附則

제28조 본 회칙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1987년 04월 05일

개정 1995년 12월 12일

개정 2002년 01월 12일

개정 2007년 01월 13일

개정 2009년 06월 11일

개정 2011년 05월 25일

개정 2013년 06월 05일

제29조 (경과조치) 본 회칙 전에 시행된 중전회칙에 시행된 사항은 본 회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

으로 본다.